

##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운영 규정

제 정 : 2022. 12. 27.

개 정 : 2025. 8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와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학교 및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·기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)**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 (부서)** ①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주관부서는 기획관리처로 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②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내용은 표1과 같다.

표 1 :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표 <개정 2025. 8. 1.>

구분	주요활동	관련 부서
지역 연계	- 지역기업 지원	기획관리처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센터
	- 지역산업 발전 지원	
	- 창업 활성화 지원	
	- 지역종합발전 계획 하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부여	
	- 지자체 사업 지원, 전문 인력 연계	
지역사회 봉사	- 주민 시설 개방	기획관리처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센터
	- 지역 문화 선도 활동	
	-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복지 활동	
평생교육	- 문화 교육 등 성인 기초 교육	기획관리처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센터
	- 다문화 이주민 교육 지원	
	- 직업 교육, 이직 교육 등	

**제4조 (주관 위원회)**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사항은 통합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주관한다.

**제5조 (구성)**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『통합혁신위원회 운영 규정』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6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1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수요분석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성과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

**제7조 (회의)** 회의에 관한 사항은 『통합혁신위원회 운영 규정』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8조 (성과관리)** 기획관리처장은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, 그 결과를 대학경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, 지역사회 협력·기여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**제9조 (업무개선)** 기획관리처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